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45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0. 5. 21.

판 결 선 고 2020. 7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공동하여 82,365,85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. 12. 16.부터 2019. 12. 1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, 피고 C은 2016. 12. 16.부터 2020. 3. 1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B은 17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고권홍

별지